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 수수 시
공직자 이익으로 간주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청탁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 시
신고·반환하면 면책



2.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3.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

1	2	3	4	5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6	7	8	9	10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12	13	14	15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인가·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특정한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7.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8.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9.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0.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1번~11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위 1번부터 11번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1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국장 A의 조카가 해당부처 특채에 응시하였고, 국장 A는 조카가 순위가 낮아 채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인사과장 B에게 면접점수를 높여서라도 채용을 적극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경우

● 조카 (=이해당사자) ● 국장 A (=부정청탁자) ● 인사과장 B (=직무수행자)



3.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2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OO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A는 B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에서 D학점을 받았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여 재수강의 기회가 없다고 판단한 A는 B교수를 찾아가 이미 성적처리가 완료된 것은 알고 있으나 자신의 취업을 위해 B학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한 경우

● 학생 A(=이해 당사자) ● 교수 B(=직무 수행자)

이번 학기 성적이 정말 중요한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이해 당사자, 학생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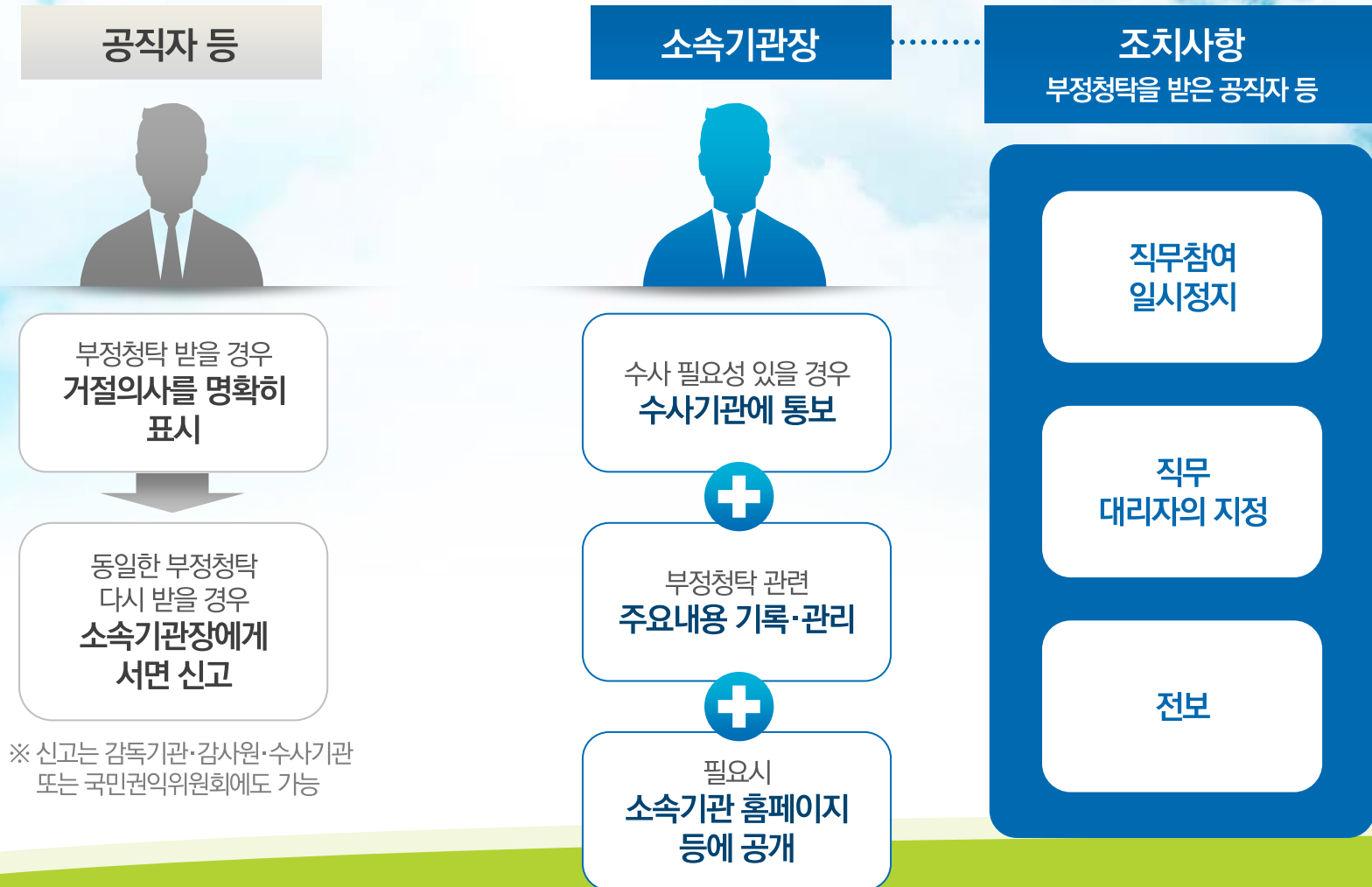
직무 수행자, 교수 B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부정청탁의 금지 신고 및 처리



4.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금품 등 제공자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 등이면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동일하게 처벌(단,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 면제)

4. 금품 등 수수 금지 **금지·허용 금품 등**

● 수수 금지되는 금품 등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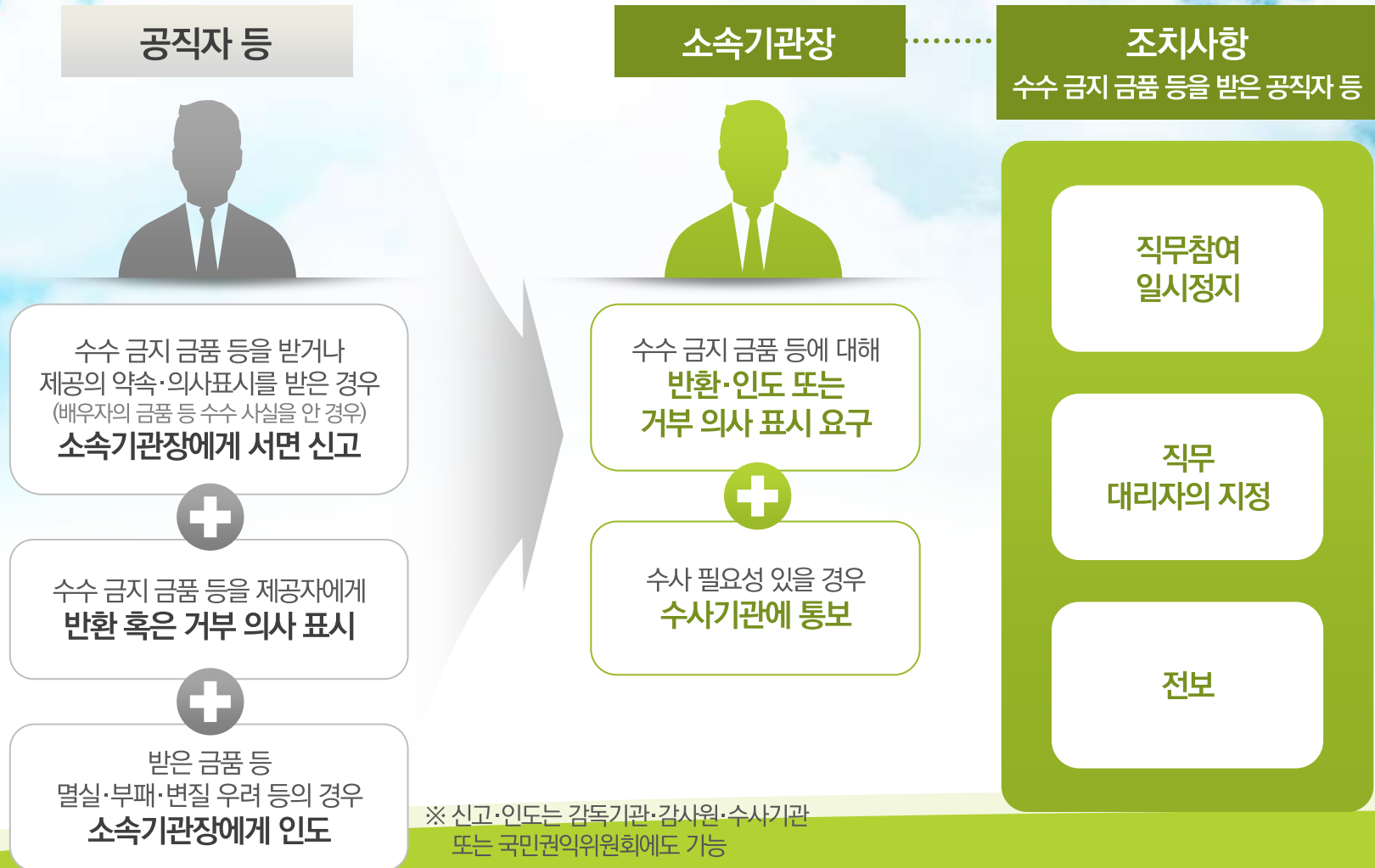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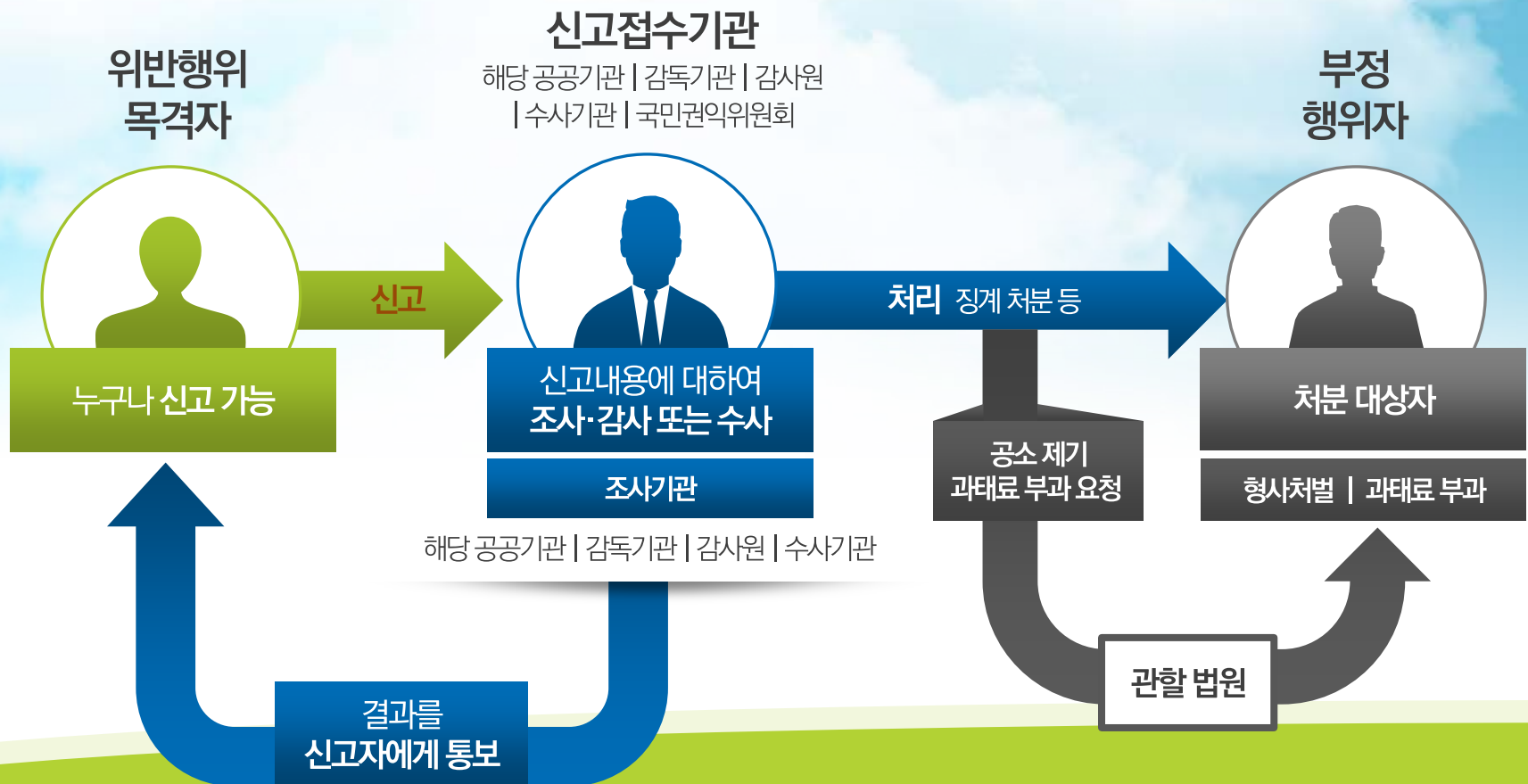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들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4. 금품 등 수수 금지 신고 및 처리



5. 위반행위 신고·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Q.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원 외로 두므로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이 아님

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Q. 민간기업의 임직원 A가 학교법인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기업이 A에게 학교법인 업무와 관계 없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직자 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Q. 학교 또는 학교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교직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속지주의)

Q.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에 따라 규율됨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교직원 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 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를 입증할 수 있으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Q.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 교직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됨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 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 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함. 다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 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

Q.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 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 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교직원 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다만,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 신고한 공직자는 처벌되지 않음)

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신고 대상임

Q.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해야 함

Q.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교직원 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됨

— 감사합니다 —